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9.

발 의 자 : 박충권 · 박준태 · 최보운
추경호 · 이인선 · 김대식
이만희 · 김기웅 · 김정재
서천호 · 김 건 · 김성원
권영진 · 강명구 · 박성훈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,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·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,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·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, 제

조,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5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총포·화약류(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)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
5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, 제조,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법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~ ⑥ (생 략)	<u>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)를</u> <u>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</u> <u>계도 등의 정보</u> 5. 「<u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</u> <u>률</u>」에서 금지하는 <u>마약류의</u> <u>사용, 제조, 매매 또는 매매의</u> <u>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</u> <u>정보</u>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<u>지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</u> <u>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정보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